

측량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	법인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SMS 수신 동의	전자우편 :						
	주소 :	FAX번호 :						
등록사항	상 호 :	대표자 :	지적측량	일반측량	공공측량			
	소재지 :		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본점	측지측량	연안측량	지하측량	영상도화	영상처리	수치지도	지도제작	항공측량
<input type="checkbox"/> 지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국토지리정보원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2. 제1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3.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4. 제3호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2만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